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0.8.30>

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일		처리기간		즉시	
소유자	성명(명칭)			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
	주소				법정동 코드				
	전자우편주소		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	
자동차	등록번호			색상		전화번호			
	사용본거지					법정동 코드			
변경사항	[]명칭		[]자동차사용본거지		[]자동차의 용도				
	[]사업자등록번호		[]자동차등록번호		[]기 타				
변경내용	변경일		변경 전		변경 후	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1조,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 (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) 1. 변경등록 신청 사유(변경 명세)을 증명하는 서류(사업용 자동차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 2. 자동차등록번호판(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) 2매	수수료 1,300원 (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같은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)
------	--	--

유의사항

-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를 말합니다)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1조제1항).
-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2항제2호).
-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같음하고, 자동차 소유자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정정신고로 같음합니다.
-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,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(등록사무소 또는 시·군·구)에 알려주십시오. 다만,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.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㎡)